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0호
----------	------

제출연월일 2005. 8. 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여비 지급 조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추경시 확보(연간 50,400천원 소요)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6. 3 ~ 6. 2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1조중 “지방공무원”을 “사천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제4조 본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u>(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 ----- <u>사천시지방공무원</u> -----</p> <p>-----</p> <p>-----</p> <p>-----</p> <p>제2조의 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p>

관계법령 발취

○ 공무원여비규정

-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